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4)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